

2000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추진계획

본 내용은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한우 번식농가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발췌하였다.

1. 사업개요

가. 목적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의 목적은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량 중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또한 우량한우의 순수혈통을 보전하는데 있다.

나. 2000년 사업계획 및 사업비

• 등록우 관리두수 18만두, 인공수정 10만두, 송아지 생산은 7만두를 목표로 하여 소요예산은 관리비로 64억 8천만원 및 등록농가에 지급하는 조사사레비 33억 7천 5백만원 등 약 103억 8700만원이다.

2. 사업추진방법

한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등록우를 포함한 전체 등록

우가 관리 대상우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일정 기준이 있으며 관리대상우라 함은 인공수정에 의해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사료를 지급하는 등록우를 말한다.

• 기준

① 기존 한우개량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등록우(기초, 혈통, 고등) - 한우개량단지내 농가 중 기초등록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됨.

② 등록우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혈통등록 암송아지

③ 협회 또는 농가 자율적으로 등록한 한우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우

※ 2000년도에 등록한 기초등록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송아지 생산시에 사료로 지급하는 조사사레비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생산된 송아지는 혈통

등록이 되면 관리대상으로 편입되어 차후 송아지 생산시에는 조사사레비를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금년부터는 농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혈통 및 고등 등록우도 관리대상에 편입되므로 대규모 농장(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유축 제외)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참여하면 인공수정후 생산되는 송아지가 있을 경우 조사사레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를 위하여 2000년도 이전에 등록완료한 기초등록우의 경우 농가당 관리두수가 혈통등록우 이상의 등록우를 포함하여 4두 이상이 되어야 관리대상우로 인정하므로 4두 미만의

한우개량 농가육성사업의 목적은 좋은 송아지의 생산이므로

반드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공수정후에는 인공수정사로부터 수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조사사례비를 청구할 때 축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우 보유농가는 4두가 되도록 등록우를 매입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초등록우가 아닌 혈통 및 고등등록우의 경우는 두수와 관계없이 관리대상우가 되며 관리대상우로 제외되기 전에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에는 조사사례비를 지급한다.

현재 혈통등록된 수송아지 및 암송아지는 시장시세보다 약간의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금방 혈통등록우의 확인을 위하여 혈통등록되는 송아지에 대하여는 축협 담당자가 연두색바코드를 부착하여 주고 있으며 일부 작년에 구입되어 재고 귀표를 사용하고 있는 조합은 앞쪽은 연두색, 뒤쪽은 노랑색 이표를 부착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 농가에서는 등록우에 바코드귀표를 부착할 때 앞뒷면이 모두 노랑색 이표가 아닌 연두색이 있는 이표를 부착하도록 담당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표에는 바코드번호 9자리 이외에 관리명호를 이표용 매직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아래의 규칙에 따라 기입하므로 송아지 구입시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00 - 01 - 0005"라고 적혀 있으면 최고 앞의 "00"은 2000년도에 생산되었다는 의미가운데 "01"은 어미가 기초등록우이므로 1세대라는 의미끝의 "0005"는 5번째로 생산된 암소임. 이때 수소의 경우는 5001부터 시작하며 혹 9001이후의 번호가 있으면 그 소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되었던 소라는 의미임.]

3. 등록우에 대한 인공수정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인공수정 후에는 수정사가 발급하는 "정액 및 인공수정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정액스토리에 적혀 있는 정액번호와 수정

증명서의 번호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여 잘 보관하였다가 송아지가 생산되면 본관하고 있던 수정증명서를 지역축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수정에 있어 현재 정액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정액을 추천하였지만 농가에서는 1등급의 정액으로 수정하여 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송아지의 생산신고와 조사사례비의 수령

등록우가 인공수정으로 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면 우선 송아지의 체중을 달아보고 지역축협 담당자에게 어미소의 명호(바코드), 송아지의 성별, 체중 등을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혹 바쁜 농번기에 송아지 생산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최소 생산후 3일전까지는 송아지 체중을 달아보고 지

[조사사례비 기준]

어미소등록구분	기초등록우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
금 액	35,000	50,000	70,000

역축협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축협 담당자가 분만후 송아지 확인을 위하여 농가로 방문하면 어미소와 송아지를 알려주고 보유하고 있던 인공수정증명서와 관리카드를 담당자에게 주면 연두색바코드를 송아지 오른쪽 귀에 부착하여 줄 것이다. 또한 조사사례비(농후사료로 지급하고 있음)의 지급절차를 물어보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료를 수령하면 된다. 이때 사료의 포장단위에 따라 사료비가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가 부담하여야 하며, 송아지 혈통등록비 두당 5,000원도 등록담당자에게 납부하면 생산된 송아지는 혈통등록이 되어 암송아지는 장차 조사사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송아지는 개량기관 또는 비육농가로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 된다.

① 위 금액중 송아지사료 100kg과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번식우사료를 지급하나 농가가 원하면 송아지사료 및 번식우사료를 조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② 송아지가 쌍태인 경우는 송아지의 사료 100kg을 추가로 지급 받음.

③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는 사료를 지급하지 않음.

※ 다산장려금과 등록우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된 등록우중 5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에는 현금 20만원, 3산 이상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노령우가 송아지를 생산하면 장려금 신청도 병행할 것.

5. 사업의 일부 대행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축협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축협이 민간수정사, 수의사, 지역 한우협회 등의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행자는 등록우관리비(36,000원/두/년)는 지역축협과 대행자간의 협의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우농가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6. 맺음말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이 때까지 축산정책중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곧 이 사업에 대한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성공적인 사업에 대하여 큰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송아지생산기반의 안정을 위하여 더욱 이 사업이 확대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초등록한 한우가 당장은 관리대상우로 편입되지 않는다 하여도 인공수정 후 생산되는 암송아지는 관리대상우로 편입이 되며, 또한 수송아지의 경우 혈통등록우가 되면 보다 많은 농가 소득이 있으므로 한우농가는 지금이라도 등록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